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7. 13.(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5.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7. 5.

라. 상정일자 : 2018. 7. 13.(제24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양승옥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제3대 민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안 별표3)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301명→3,314명(13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092명→3,098명(6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04명→208명(4명 증원)
 - 별정직공무원: 2명→5명(3명 증원)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
 - 일반직공무원: 93.7%→93.5%(0.2% 감소)
 - 특정직공무원: 6.2%→6.3%(0.1% 증가)
 - 정무직·별정직공무원: 0.1%→0.2%(0.1% 증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제3대 민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01명에서 3,314명으로 총 13명이 증원되어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또한 민선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별정직공무원 정원¹⁾은 대략 2명~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1) 17개시도 별정직공무원 정원 현황(2018.7.1. 기준)

시도	정원 기준	직급별 정원					비율 (정무직포함)	비고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	계		
인천	2	1	1			2	0.1% 이내	
서울	2	1	1			2	0.1% 이내	
부산	2	1	1			2	0.1% 이내	
대구	0					0	0.3% 이내	
광주	2	1	1			2	0.2% 이내	
대전	2		1	1		2	0.2% 이내	7급상당이하
울산	1	1				1	0.2% 이내	
세종	2	1		1		2	0.6% 이내	
경기	2	1	1			2	0.1% 이내	6급상당이하
강원	4	2	2			4	0.5% 이내	
충북	3	2	1			3	0.2% 이내	6급상당이하
충남	2	1	1			2	1.0% 이내	
전북	4	1	1	1	1	4	0.2% 이내	
전남	4	2	2			4	0.2% 이내	6급상당이하
경북	0					0	0.5% 이내	
경남	3	1	2			3	0.1% 이내	
제주	3	1	1	1		3	0.5% 이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준수하고 업무의 성질과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원을 증원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증원되는 비서관의 주요업무²⁾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서관과 사업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황³⁾

2018.07.02.

구 분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별정직	별정직 계	2	0	2	0	0
	5급상당 비서관	1	0	1	0	0
	6급상당 비서	1	0	1	0	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선희 위원 >

○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는?

(행정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으로 각 시도에서도 국한적으로 임용해서 활용함.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공약 7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을 증원해서 시민소통, 혁신미래교육, 마을공동체교육을 전문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함.

2) 의원요구자료 회신(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6820호, 2018.7.11.)

-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증원안: 인권보호담당비서관(5급상당), 혁신미래교육비서관(6급상당), 마을교육공동체비서관(6급상당)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54호, 2018.7.2., 일부개정) [별표]

- 다른 시도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2~4명 정도인데 다른 특화된 것이 있는지?

(행정국장) 기존에는 민원을 각 부서에서 대응하였는데 시민소통 비서관 도입으로 노동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과 유기적 소통을 하고 산적인 민원을 앞으로는 교육감실에서 직접 컨트롤하고자 함.

- 비서실과 일반직과의 업무 단절은 없는지?

(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일반조직과의 소통의 한계가 발생하는 비서실을 강화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자 함.

< 서정호 의원 >

- 별정직 공무원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함 별정직 공무원 증원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는데 제안 설명 후 별도의 정회시간을 가져 의원님들 서로가 논의할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임지훈 의원 >

- 별정직 증원이 공약사항 이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행정국장) 교육감님 7대 공약사항으로 시민소통, 인권보호정책 추진, 혁신미래교육으로 혁신지구를 4개에서 8개로 확대, 행복배움학교를 40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 마을공동체교육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관협력, 혁신미래교육과 마을공동체교육을 연계함.

- 인권보호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역할이 없었는지?

(행정지원) 기존에도 인권보호와 시민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확대 시행 하려함.

(교육국장) 기존에 교육혁신지구는 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부평구로 총 4개 지구가 있었는데 향후 8개지구로 확대하여 각 지자체 및 시민들과 소통 협력의 역할이 강조됨.

○ 타시도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교육국장) 타시도 비교 보다는 타시도의 장점을 도입하고자 함.

○ 별정직공무원 증원이 17시도 중 5명으로 가장 많은데 인원증원으로 성과와 효율성이 있는지?

(행정지원) 별정직 각 시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는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이 있음. 교육정책, 시민소통, 혁신, 인권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성과를 이루려 함.

○ 인권담당비서관을 도입하려 하는데 기존에는 학생인권을 소홀히 했는지?

(교육국장) 학생인권 조례 자체는 없었으나 학생 두발자유화, 야간자율학습 강제 폐지 등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음.

○ 혁신교육미래비서관의 업무는?

(교육국장) 기존에 혁신지구업무를 한 명이 담당하였으나 추후 더 많은 학교가 참여 예정으로 혁신지구업무를 담당함.

○ 마을교육공동체비서관의 증원이유?

(교육국장) 마을연계학교로 도서관프로그램, 예술체육활동으로 학교와 지자체 연계활동으로 소통하기 위함

(교육혁신과장) 혁신지구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하여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지역적 여건상 지체되다 2017년에 계양구, 부평구로 확대하여 향후 8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지자체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증원하려 함.

○ 전문가의 채용 기준은?

(교육국장) 마인드, 경험, 전공 학위 등으로 기준을 삼을 것.

○ 별정직 증원의 필요성이?

(행정국장)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사항이 인권, 시민소통, 혁신미래교육, 마을공동체교육을 빠르게 확산하고 정착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별도 인력증원이 필요함.

< 김성수 의원 >

○ 조례안을 거치면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함.

< 김진규 의원 >

○ 별정직공무원 3명 증원을 하는데 있어 설득이 안되는데 왜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감님의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한하는데 기존의 이청연 교육감님은 가능했는데?

(행정국장) 기존의 교육감님도 추진은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시행 하기 위해 인원 증원이 필요함.

○ 도성훈 교육감님이 당선 후 별도로 자기사람 챙기기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수정내용]

- [별표 1] 일반직 비율 “93.5% 이상”을 “93.6%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비율을 “0.2% 이내”를 “0.1% 이내”로 수정한다.
- [별표 2]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비율 “40% 이내”를 “50%”로, 6급 상당 비율 “60% 이상”을 “50%”로 수정한다.
- [별표 3] 일반직 소계란 “3,098명”을 “3,101명”으로, 5급 이하 소계란 “3,059명”을 “3,062명”으로, 별정직 소계란 “5명”을 “2명”으로 수정한다.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01명”을 “3,31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88명”을 “3,0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4명”을 “208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수정안

구분	일반직 (개정안→수정안)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개정안→수정안)
비율	93.5% 이상→93.6% 이상	6.3% 이내	0.2% 이내→0.1% 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수정안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개정안→수정안)	6급 상당 (개정안→수정안)	7급 상당
비율	40% 이내→50%	60% 이상→50%	-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수정안

직급별		기관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개정안→수정안)					
총계		3,31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98→3,101					
	3급	6		6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59→3,062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5→2					
5급 상당 이하 소계		5→2					
특정직 소계		20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80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수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301명</u>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u>3,088명</u></p> <p>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u>204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3,314명</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3,097명</u></p> <p>3. ----- <u>20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3,314명</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3,097명</u></p> <p>3. ----- <u>208명</u></p>

현행	개정 (안)	수정 (안)																								
<p>[별표 1]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74 563 786 678">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직</th> <th>특정직</th> <th>별정직·정무직</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93.7% 이상</td> <td>6.2% 이내</td> <td>0.1%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7% 이상	6.2% 이내	0.1% 이내	<p>[별표 1]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08 563 1420 678">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직</th> <th>특정직</th> <th>별정직·정무직</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93.5% 이상</td> <td>6.3% 이내</td> <td>0.2%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5% 이상	6.3% 이내	0.2% 이내	<p>[별표 1]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44 563 2056 678">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직</th> <th>특정직</th> <th>별정직·정무직</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93.6% 이상</td> <td>6.3% 이내</td> <td>0.1%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6% 이상	6.3% 이내	0.1% 이내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7% 이상	6.2% 이내	0.1% 이내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5% 이상	6.3% 이내	0.2% 이내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6% 이상	6.3% 이내	0.1% 이내																							
<p>[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4.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data-bbox="174 1090 786 1204"> <thead> <tr> <th>구분</th> <th>5급 상당</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50%</td> <td>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50%	50%	-	<p>[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4.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data-bbox="808 1090 1420 1204"> <thead> <tr> <th>구분</th> <th>5급 상당</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40% 이내</td> <td>60%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40% 이내	60% 이상	-	<p>[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4.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data-bbox="1444 1090 2056 1204"> <thead> <tr> <th>구분</th> <th>5급 상당</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50%</td> <td>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50%	50%	-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50%	50%	-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40% 이내	60% 이상	-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50%	50%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별표 3]												[별표 3]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분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직급별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분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01										총계		3,314										총계		3,314									
정무직 소계		1										정무직 소계		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92										일반직 소계		3,098										일반직 소계		3,101									
3급		6				6				3급		6				6				3급		6				6									
4급		26		1		21		4		4급		26		1		21		4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53										5급 이하		3,059										5급 이하		3,062									
전문경력관		7										전문경력관		7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직 소계		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연구사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별정직 소계		5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5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04										특정직 소계		208										특정직 소계		20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176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180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180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01명”을 “3,31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88명”을 “3,0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4명”을 “208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5% 이상	6.3% 이내	0.2% 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40% 이내	60% 이상	-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1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98				
	3급	6		6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59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5				
5급 상당 이하 소계		5				
특정직 소계		20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8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301명</u>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u>3,088명</u></p> <p>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u>204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3,314명</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3,097명</u></p> <p>3. ----- <u>208명</u></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20%;">일반직</td> <td style="width: 20%;">특정직</td> <td style="width: 20%;">별정직·정무직</td> </tr> <tr> <td>비율</td> <td><u>93.7%</u> 이상</td> <td><u>6.2%</u> 이내</td> <td><u>0.1%</u> 이내</td> </tr> </table>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93.7%</u> 이상	<u>6.2%</u> 이내	<u>0.1%</u> 이내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20%;">일반직</td> <td style="width: 20%;">특정직</td> <td style="width: 20%;">별정직·정무직</td> </tr> <tr> <td>비율</td> <td><u>93.5%</u> 이상</td> <td><u>6.3%</u> 이내</td> <td><u>0.2%</u> 이내</td> </tr> </table>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93.5%</u> 이상	<u>6.3%</u> 이내	<u>0.2%</u> 이내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93.7%</u> 이상	<u>6.2%</u> 이내	<u>0.1%</u> 이내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93.5%</u> 이상	<u>6.3%</u> 이내	<u>0.2%</u> 이내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4.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20%;">5급 상당</td> <td style="width: 20%;">6급 상당</td> <td style="width: 20%;">7급 상당</td> </tr> <tr> <td>비율</td> <td><u>50%</u></td> <td><u>50%</u></td> <td>-</td> </tr> </table>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u>50%</u>	<u>50%</u>	-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4.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20%;">5급 상당</td> <td style="width: 20%;">6급 상당</td> <td style="width: 20%;">7급 상당</td> </tr> <tr> <td>비율</td> <td><u>40% 이내</u></td> <td><u>60% 이상</u></td> <td>-</td> </tr> </table>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u>40% 이내</u>	<u>60% 이상</u>	-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u>50%</u>	<u>50%</u>	-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u>40% 이내</u>	<u>60% 이상</u>	-														

현 행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0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92				
3급	6		6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53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04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76				

개 정 안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1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98				
3급	6		6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59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5				
5급상당 이하 소계	5				
특정직 소계	20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80				